

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

제정일: 2022년 2월 26일



제1조(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)

①정관 24조의 2항에 의거하여, 동조 1항의 1호 '기본회비'와 2호 '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별경비'의 부과는 총회 참석자의 2/3의 찬성을 거쳐 부과할 수 있다.

②다만 동조 1항 3호의 '조합사업과 관련 발생하는 수수료' 및 그에 근거한 특별회비 징수는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유형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례 발생 시 수수료 금액 및 요율, 납부시기 등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

